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Guideline for the Labeling of Cosmetic Products

2024. 12.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_____)	
	<input type="checkbox"/>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광고의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안내서 구분	<input type="checkbox"/>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input type="checkbox"/> 예(☞지침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안내서)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기타 확인 사항	<input type="checkbox"/>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4년 12월 일

담당자
확 인(부서장)

이용준
고지훈

이 안내서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표현의 예시를 제시하고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주요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4년 12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3405, 3409 팩스번호: 043-719-3400

제·개정 이력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연번	제·개정번호	발행일자	주요내용
1	B2-2011-4-001	2011. 06. 22.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2	B2-2013-4-004	2013. 11. 29.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3	B2-2014-4-004	2014. 09. 30.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4	B2-2015-4-001	2015. 04. 30.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5	안내서-0086-02	2020. 12. 24.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 표현, 외국어 광고 표현 제한, 실증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 등)
6	안내서-0086-03	2021. 12. 30.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 방법 마련)
7	안내서-0086-04	2023. 11. 23.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 (추출물 함량 표시·광고 방법 마련)
8	안내서-0086-05	2024. 5. 7.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일부 개정)
9		2024. 12.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일부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I. 목적

이 지침은 화장품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2조, 제23조, 별표 5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금지표현의 예시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자료 요청에 관한 주요 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 범위 및 기준

1. 적용 범위

- ① 이 지침은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판매자(이하 '책임판매업자등'이라 한다)가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이하 '표시'라 한다)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에 적용한다.
- ② 이 지침은 화장품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표시·광고 표현범위

책임판매업자등이 화장품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금지표현 등 세부사항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3. 표시·광고 실증의 주요 대상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 요청의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실증대상은 사실과 관련한 사항들 모두 해당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국한되지 않는다.

III. 주의사항

1.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위탁을 받은 제조업자는 수입화장품의 외국어로 표현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이 지침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 삭제, 오버레이블링(over-labelling)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과정에서 스티커 등이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지침은 화장품 표시·광고의 금지표현과 실증자료 요청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예시규정이며,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3. 책임판매업자등은 표시 한 의미의 영어 등 외국어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하여 금지표현의 범주로 판단할 수 있다. 및 광고를 실증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시험(*in vivo*) 또는 생체 외 시험(*in vitro*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사용금지 표현에 해당하는 단어와 동일/유사한 의미의 영어 등 외국어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하여 금지표현의 범주로 판단할 수 있다.
5.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정한 표시·광고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6. 이 지침 외의 광고 표현의 경우에도 화장품법령, 고시 및 민원인 안내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되, 단어만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하여 금지표현의 범주로 판단할 수 있다.
7. 온라인 부당광고 해당 여부 검토시, 광고의 제목명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8. 이 지침 [별표 2] 3.에 따라 ISO 천연·유기농 지수를 표시·광고할 때에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다음 표시·기재 방식을 참고하여야 한다.

- ① **제품의 전면부에 기재·표시하는 경우**
 "식약처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
 * 전면 ISO 지수 표시와 함께 기재 권장(미기재 시 다른 면에 ②와 같이 기재 필요)
- ② **제품의 전면부 외에 기재·표시하는 경우**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로 식약처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 아님" 표시
 * 눈에 띄는 곳에 강조하는 등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기재 필요
- ③ **제품이 아닌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
 "천연지수 00%(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한 지수임). 다만, 이 지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 표시 등
 * 제품에 표시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 또는 예시와 같이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표현에 대한 광고는 가능하며, 면적을 활용해 구체적 안내 필요

9.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할 때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다음 표시·기재 방식을 참고하여야 한다.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추출·희석용매 등의 함량을 제외한 추출된 물질의 함량을 표시·기재한다. 다만, 용매의 비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추출물에 용매가 포함되어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예, ○○추출물(추출용매 '가' 포함)]

※ 추출물의 함량은 추출된 물질(예, 녹차추출물)과 추출·희석용매(예, 정제수) 등을 분리하여 작성된 원료의 조성 정보에 관한 자료 및 제품에서 해당 원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한다.

<예시>

A 원료 조성비	
정제수	80%
녹차추출물	10%
C 보존제	5%
D 첨가제	5%

→

완제품 조성비	
정제수	60%
A 원료	20%
B 원료	10%
E 보존제	3%
C 보존제	1%
D 첨가제	1%
향료	5%

= 2% 녹차추출물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관련

구분	금지 표현	비고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토피 · 모낭충 · 심신피로 회복 · 건선 · 소양증 · 살균·소독 · 항염·진통 · 해독 · 이노 · 항암 · 항진균·항바이러스 · 근육 이완 · 통증 경감 ·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 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 기저귀 발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드름 	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 또는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미, 주근깨(과색소침착증)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균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액체비누에 대해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 함유로 인해 향균 효과가 '더 뛰어나다', '더 좋다' 등의 비교 표시·광고는 금지

구분	금지표현	비고
피부 관련 표현	· 임신선, 탄살	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은 제외
	·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디톡스, detox) ·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 가려움을 완화, 개선, 해결한다.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된 '효능효과' 표현은 제외 * 보습을 통해 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의 일시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제외(단, '보습'과 '일시적'인 경우에 한함)
	· ○○○의 흔적을 없애준다. <예시> 여드름, 흉터의 흔적을 제거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가려준다'는 표현은 제외
	· 홍조, 홍반을 개선, 제거한다.	
	· 뽀루지를 개선한다.	
	· 피부의 상처나 질병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거나 회복 또는 복구한다.	일부 단어만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 피부노화 · 셀룰라이트 · 붓기·다크서클 · 피부구성 물질(예 : 효소, 콜라겐 등)을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시킨다.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모발 관련 표현	· 발모·육모·양모 · 탈모방지, 탈모치료 · 모발 등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한다. ·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은 제외

구분	금지표현	비고
생리활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순환 · 피부재생, 세포 재생 · 호르몬 분비촉진 등 내분비 작용 · 유익균의 균형 보호 · 질 내 산도 유지, 질염 예방 · 땀 발생을 억제한다. ·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 세포 활력(증가), 세포 또는 유전자(DNA) 활성화 	
신체 개선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어트, 체중감량 · 피하지방 분해 · 체형변화 · 몸매 개선,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굴 윤곽개선, V라인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연출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제외
원료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논문 등을 통한 간접적으로 의약품 오인 정보제공을 포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슨(medicine), 드럭(drug), 코스메슈티컬, 치유 등을 사용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관련

구분	금지표현	비고
기능성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미백, 화이트닝 (whitening), 주름(링클, wrinkle) 개선, 자외선(UV)차단 등 기능성 관련 표현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기능성 화장품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 	
원료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식약처 미백 고시 성분 OO 함유' 등의 표현 ·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 · 원료 관련 설명시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사용(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OO 원료) · 원료 관련 설명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천연·유기농 화장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천연 화장품,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천연(Natural) 화장품', '유기농(organic)화장품' 관련 표현 	<p>제품에 천연, 유기농 표현을 사용하려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적합 필요(이 경우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구비 의무)</p> <p>단, [별표2] 3.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p>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관련

구분	금지표현	비고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 아토피 협회 인증 화장품 · OO 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 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 개발한 화장품 ·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 OO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약국용, 약국전용 화장품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 <예시> 無(무) 스테로이드, 無(무) 벤조피렌 등 · 부작용이 전혀 없다. · 먹을 수 있다. · 일시적 악화(명현현상)가 있을 수 있다. · 지방불림생성 · 보톡스 · 레이저, 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내 노폐물 제거 	단, 피부·모공 노폐물 제거 관련 표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러(filler)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채워준다', '연출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제외
줄기세포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기원 표현 ·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타만, 식물줄기세포 함유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외) <p><예시>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억 세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불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표현 가능 · 식물 등 인체 외에서 유래한 경우에는 제외

구분	금지표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에서 유래한 특정성분(엑소좀, 리포좀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예시> 엑소좀 화장품, 엑소좀 등 	
<p>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크림, 성 윤택작용 - 쾌감을 증대시킨다. - 질 보습, 질 수축 작용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시 및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기 사진 등의 여과 없는 게시 -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시 또는 광고 	
<p>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사용방법을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예시>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IS(Microneedle Therapy System), 외음부세정제의 '이너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 	
<p>그 밖의 기타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임 · 원료 관련 설명 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 피부 나이 n(세 등 기간을 의미하는 단위) 감소 또는 어렵진다는 표현 <예시> 피부나이 10년 감소, 피부나이 5세 어렵짐, 피부나이 -3살 등 	<p>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관련 표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표현 제외</p> <p>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p>

[별표 2]

화장품 표시·광고 주요 실증대상

구 분	실증 대상	비 고
1.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등에 따른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 일시적 쉬블라이트 감소 · 붓기 완화 · 다크서클 완화 · 피부 혈행 개선 · 피부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 · 피부 피지분비 조절 · 미세먼지 차단, 미세먼지 흡착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 적용시험 자료로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발의 손상을 개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노화 완화, 안티에이징, 피부노화 징후 감소, 피부노화지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 다만, 자외선 차단 주름개선 등 기능성 효능·효과를 통한 피부노화 완화 표현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를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피부노화지수의 단위는 'n(세 등 기간을 의미하는 단위)으로 표기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 효소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름 완화 또는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이미 심사받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로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로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이미 심사

구 분	실증 대상	비 고
		받은 자료에 근거가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로 입증
2. 효능·효과·품질에 관한 내용	·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예시> 수분감 30% 개선 효과 피부결 20% 개선 2주 경과 후 피부톤 개선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
	·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예시> 피부과 테스트 완료 ○○시험검사기관의 ○○ 효과 입증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
	·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표현 ¹⁾	· 시험 분석 자료로 입증 - 단, 특정성분이 타 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해당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 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 등 활용
	· 타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예시> “○○보다 지속력이 5배 높음”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
3.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에 관한 내용	· ISO 천연·유기농 지수 ²⁾ 표시·광고 <예시> - 천연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 천연유래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 유기농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 유기농유래지수 00% (ISO 16128 계산 적용)	· 해당 완제품 관련 실증자료로 입증 - 이 경우 ISO 16128(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산이라는 것과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도 함께 안내 필요(주의 사항 참고)

1) 금지표현(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제외한 경우에 한함

2) ISO 16128: 화장품의 천연·유기농 계산값을 얻기 위한 방법(가이드라인)

* 본 민원인 안내서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제정·개정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발행일	2024년 12월 일
발행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편집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 고지훈
편집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강원구, 구소현, 김대기, 김민우, 백은희, 신재섭, 양석원, 유경화, 이민지, 이선미, 이용준, 임소라, 천세경(가나다 순)
발행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전화번호	043) 719-3405
팩스번호	043) 719-3400